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139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7.11.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5.22

www.ingdi.co.kr

잉디 사고력영어

정 보 공 개 서

[잉디 에듀케이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잉디 에듀케이션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34, 2층 (중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899-110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51-740-512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사업부, 1899-1107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잉디 에듀케이션	잉디 사고력영어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34, 2층 (중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0. 1. 2.	김민정	1899-1107	051-740-5125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87-40-0044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잉디 사고력영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잉디 사고력영어	미국교과서 사회·과학·수학·언어영역을 한 달 1권으로 구성된 총 88권의 코스북 교재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마다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교구를 적극 활용해 직접 체험하며 수업하고, 사고력이 향상되는 영어수업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 호	잉디 사고력영어 ○○캠퍼스	
상표(서비스표)	잉디	상표출원번호 : 상표-2017-0041430 상표등록번호 : 40-1317882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EngDi, IngDi 한 달 1권으로 배우는 미국교과서 파닉스부터 에세이까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49,735	-	-
2022년	-	-	-	83,976	-	-
2023년	-	-	-	70,09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표. 5-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민정	대표	2020. 3. ~ 현재	대표	업무총괄, 가맹본부 설립 추진 및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실 없음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의 상표는 출원하여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잉디 (상표권)	영업표지사용 및 대가수수	2017. 3. 31. 출원 2018. 1. 2 등록	상표 2017-0041430 40-1317882	이지현	(2028.1.2)
잉글리쉬 디스커버리 교재 100여 종	교재 사용권 (편집 저작물)	2021.08.24 등록	저작물 등록번호 C-2021-033655 ~ 033733 C-2021-032250 ~ 032258 C-2018-007901 ~ 007915 C-2017-009019	이지현	(2024.11.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았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잉디 사고력영어] 가맹사업 현황

1. [잉디 사고력영어]를 시작한 날: 2017. 7. 16

2. [잉디 사고력영어]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잉디 에듀케이션	잉디 사고력영어	이지현	2017. 7 ~ 2018.1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15, 1층(우동)
잉디 에듀케이션	잉디 사고력영어	이지현	2018.12 ~ 2020.3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15, 2층 일부호(우동)
잉디 에듀케이션	잉디 사고력영어	김민정	2020.3 ~ 2020.10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나길 77, A동 202호 (중동, 한영9차)
잉디 에듀케이션	잉디 사고력영어	김민정	2020.10 ~ 2024.02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1815호 (우동, 오션타워)
잉디 에듀케이션	잉디 사고력영어	김민정	2024.02 ~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34, 2층 (중동)

3. [잉디 사고력영어] 업종

영업표지	업종	
잉디 사고력영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외국어)	영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잉디 사고력영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9	-	10	10	-	9	9	-
서울	-	-	-	-	-	-	-	-	-
부산	5	5	-	6	6	-	6	6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1	1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잉디 사고력영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0	-	1	-	-	9
2022	9	1	-	-	1	10
2023	10	-	1	-	-	9

6. [잉디 사고력영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당	상한	면적 3.3㎡ 당	하한	면적 3.3㎡ 당	
전체	9	138,025	5,309	251,470	18,795	32,550	1,655	7곳 산정
서울	-	-	-	-	-	-	-	
부산	6	127,654	6,484	209,580	18,795	32,550	4,931	5곳 산정
대구	1	-	-	-	-	-	-	5곳 미만
인천	1	-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1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위 표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 추정이 가능한 당사 7개 가맹점의 추정(가맹점 당 교재 공급수량*평균 교육료) 매출액입니다.

8. [잉디사고력영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잉디사고력영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9	1,77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잉디 사고력영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9-1]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예치신청서 참조)

- 예치기관 : 농협은행
- 담당지점 : 센텀시티점

- 전화번호 : 051-744-3761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대우트럼프상가 1층
- 예치방법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서식별첨)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제도”의 이용신청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터넷뱅킹으로 가맹금 예치에 관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예치금을 예치한 후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해 두어야 하며, 귀하가 영업개시를 하거나 예치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에 예치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귀하가 제소·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되며, 이와 같은 사항은 농협은행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 해당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없음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인디 사고력영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도	확정 금액 (가입비, 교육비, 물품비)
계속 가맹금	가맹본부		확정 금액 (가입비, 교육비, 물품비)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500				
가입비 (개설준비비)	2,000	계약체결일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점모집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이 안 됨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함
교육훈련비 (know-how)	850	계약체결일	교육개시 7일 이전	교육일~교육개시 6일 이전부터는 반환불가	교육개시 7일 이전까지 교육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가 완료됨
초도물품비	1,650	계약체결일	물품수령 이전	물품수령 이후에는 반환불가	

2)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500
가입비	2,000
교육훈련비(know-how)	850
초도물품비	1,65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예상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0,960 ~25,960	1,048 ~1,298			66㎡ (20평) 기준
필수설비 (책상, 칠판, pc 등)		5,000 ~8,000	250 ~400		자체시공하므로 해당없음	- 가맹본부는 필수설비 디자인 및 색상에 대하여 전체적인 감리, 감독, 의견만 제공함. - 비용은 본사 직영점 설치비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임.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후 자체시공	14,000 ~16,000	700 ~800		자체시공하므로 해당없음	- 직영점 설치비용과 대비하여 추정한 금액이므로 실제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맹본부는 컨셉 및 디자인에 대한 감리 및 의견만 제공함.
간판		1,000	-		자체시공하므로 해당없음	- 가맹본부의 BI를 준수해야함. - 간판사이즈의 기준은 전면간판은 가로 2m*세로 0.8m이상이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우선함
어학기 헤드셋		360	-		자체시공하므로 해당없음	1세트 6만원*6개
어학용책상 및 의자		600	-		자체시공하므로 해당없음	1세트 10만원*6개
기타 개점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 위 표의 금액은 당사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위 표시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 사업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행정구역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를 실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3. 최적의 입지조건을 도출한 후 가맹본부에 통지합니다.

* 가맹본부는 점포개발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뿐, 직접적인 시장조사와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가맹점 사업자가 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 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개시일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가맹사업 희망자의 부담이 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을 완료한 자	1. 학원법 및 부속법령 및 시행규칙등에 의하여 학원설립 및 운영이 금지된 자가 아닌자 2. 가맹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사업자의 고유권한에 속함	1. 당사의 제반규정을 숙지한 자 2. 당사의 교육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영어교육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3. 한정치산자,금치산자,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근 5년간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4.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신입입문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가맹본부의 부가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수업료의 3.3%	익월 5일	반환불가	실비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개시 7일 이전	교육개시 6일 이전부터는 반환불가	
광고분담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각 70%, 30%로 부담	실비	가맹본부 가 지정함	광고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후 반환불가	
점포환경 개선 비용	시공 업체	가맹본부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재비	가맹본부	실비	교재납품 5일 이전 선결제	공급받은 교재의 품질검사 후 하자 발견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가맹점사업자 가 수량 및 품질 검사의무를 대만히 한 경우	

회계처리비용	해당없음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출보고	분기별로 매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보고	분기별 1회	
학원세부운영	운영실태조사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50				
가맹 갱신비	450	계약기간 만료 일 1개월 전	반환되지 않음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투자	
추가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개시 전	교육개시 7일 이전	교육개시 6일 이전부터는 반환불가	추가교육시 필요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도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선택가능). 만약 가맹사업 양도로 인하여 귀하가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만약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잉디 사고력영어 OO점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서면 승인 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잔여기간을 인정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잔여기간이 아닌 완전한 기간을 부여할 경우(새로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양수인과의 신규가맹계약으로 보아 가맹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채무(교재비 및 물품비용)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계약 종료 즉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와 동시에 학원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잉디 사고력영어 시설물(간판, 현판, 선팅, 차량광고, 스티커, 현수막 등 붙문) 등 가맹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내용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이외에 각종 물품 등에 사용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나 상호, 로고, 상표와 같은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본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가맹본부와 동종업계(교육서비스>외국어)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과 영업비밀, 고객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매뉴얼을 비롯한 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자료 및 교재, 기자재를 원본으로 즉시 가맹본부에 반환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본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가맹계약서에 규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금일십만원정(₩100,000)의 지연손해배상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잉디 사고력영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잉디 사고력영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입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학습 및 교육서비스	금지		
상담자료 및 매뉴얼			
기타 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자료, 전용교재 및 학습부교구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아래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을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한 달 1권으로 배우는 English Discovery Course Book] 1) Kinder 1단계~6단계 2) Discover 1단계~2단계 3) Investigator 1단계~2단계 4) Explorer 1단계~2단계 5) Specialist 1단계~2단계 6) Master 1단계~2단계 7) Intensive Phonics 1단계~4단계 8) Intensive Conversation 1단계~4단계 9) Intensive Science 1단계~3단계 총 168단계 과정	① 좌측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원생들에게 판매할 수 없음 ② 가맹본부가 제시한 교재로 기준에 맞은 학습시스템으로 수업진행해야 함 ③ 비정상적, 비윤리적 거래	1회 위반시 서면으로 시정권고 2회 위반시 상품공급의 중단, 가맹계약의 해지, 재계약거절, 손해배상청구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점 소속 원생 외의 외부학생(비회원) 다른 가맹점사업자 동종업체 (외국어교육)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교재 및 품목 및 학습시스템 일체	판매금지, 정보유출금지	1회 위반시 서면 시정요구 2회 이상 위반시 계약 해지하고 상품공급중단, 손해배상청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교재	교재별로 상이함	가격변동시 홈페이지에 공지	
온라인학습	과정별로 상이함	가격변동시 홈페이지에 공지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교육학원	잉디 에듀케이션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강의실 기준 실3.3㎡ 당 100세대 2. 최대 3,500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일 동 기준 하나의 가맹점 개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구체적으로는 기관입주, 아파트단지 유치 등으로 해당 영업지역 내의 교육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의한 7~11세의 학생수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사는 1만명을 단위로 여타 가맹점 또는 기존 가맹점의 가맹분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시. 20,001~30,000명 1개 추가, 20,001~40,000명 2개 추가)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

하여 ‘잉디 사고력영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잉디 사고력영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 및 마케팅 소홀로 인해 타 가맹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판매부진 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잉디 사고력영여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 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 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가맹금 및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맹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양도인수오 영업상속 규정의 절차와 내용을 이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점 개설이 3개월 이상 미루어 지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회원탈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맹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한 원장입문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한 간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제품을 불법복사 및 표절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타사 교재를 사용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가맹본부의 행정지시를 뚜렷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무시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교재판매가 부진한 경우(개원 5개월 이후부터 월평균 교재 출고가 20세트 이하인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관리자로 임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측이 변경내용을 담은 합의서나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를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작성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수정, 변경이 없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법률상 학원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②가맹본부가 승인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1개월 내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상의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양도계약을 체결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

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비가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후 가맹본부가 승인하는 경우	가맹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	① 가맹사업자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는 운영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③ 가맹계약서 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상속절차에 준용한다. ④ 상속인에 대하여 가맹비는 면제되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교육은 이수하여야 한다.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잉디 사고력영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어학원, 학원, 교습소, 공부방, 개인 과외, 학교, 서점, 도서대여점 및 이와 동종의 가맹사업	당사는 영업비밀 및 상표보호를 위해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잉디 사고력영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24시간(제한없음)	주당 2회, 3회, 5회 등 (공휴일, 방학기간 등 제외)	가맹본부와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근무하도록 권장함	가맹본부와 협의	원장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귀하의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점검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맹본부가 촬영, 녹취, 서류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	-------	---------	-----	----

교육시스템관리	담당자가 가맹점을 방문 ▶ 교육의 품질 확인 및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의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평균 분기 1회)		
교육시설관리	담당자가 가맹점을 방문 ▶ 시설의 배치 및 청결도 확인 ▶ 관리표작성 ▶ 가맹점사업자의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평균 분기 1회)		
적극성과 친절도	담당자가 소비자로 가장하여 가맹점을 불시에 방문 ▶ 상담 ▶ 적극성과 친절도 확인 ▶ 관리표작성 ▶ 완료	불시		
기타 매출현황 등	담당자가 가맹점을 방문 ▶ 원생추이와 매출현황 점검 ▶ 관리표작성 ▶ 가맹점사업자의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평균 분기 1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표를 작성하는 경우,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잉디 에듀케이션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잉디 사고력영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교재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의 30% 중 가맹점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조사 및 결정(50% 이상 동의할 경우) ▶ 가맹점 부담액 제시	
	교재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0%	광고비의 30% 중 가맹점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가맹점 개별광고	원생모집		전액부담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과 기획에 대해서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교육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 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본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일수 * 금사만원정(₩4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이천만원정(₩20,000,000)]으로 합니다.
- ②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정(₩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또는 고의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피해를 주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

자는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과 [금삼천만원정(₩30,000,000)]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2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2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신청서 접수	D-3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2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5	
가맹금 입금	- 가맹금 입금	D-15(1일)	4,500
교육이수	- 운영 및 프로그램 교육 실시	D-13~14(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영업에 필요한 설비 구비	D-9~12	
기본물품 제공	- 사업개시에 필요한 물품 발송	D-7~9(3일)	
인가 및 등록	- 교육청 학원 인허가 - 사업자등록	D-4~6(3일)	
가맹점 개설	-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니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점의 하자 발생 또는 파손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구니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집가장비교체비용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50% ~ 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50 ~ 80% -단, 집가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없음

당사는 잉디 사고력영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잉디 사고력영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교육	회사소개, 온라인교육, 표준수업모델제시, 학습시스템교육, 교재교육, 마인드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7개월 이내	필수교육
원장집중교육	신교재 발표, 특강교육	실습교육 토론식교육	연 2회	필수교육
본사심화교육	학습시스템 심화교육	6시간	비정기교육	선택교육
본사향상교육	가맹점운영 강화교육	4시간	비정기교육	선택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잉디 에듀케이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입문교육	1일	850	최초 계약시 이수
원장집중교육	1일	33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본사심화교육	6시간	22	선택
본사향상교육	4시간	22	선택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원장입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서면 경고 후 2차 위반시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 공급 교재 및 교구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2] 가맹본부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4] 인근 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별첨5]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